

전주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2가단316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1. 12.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12. 10. 접수 제1171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23. B과 사이에 B이 'C 피부관리실' 운영자금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18,000,000원, 보증기한 2021. 3. 22.(후에 2022. 3. 22.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B은 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B을 대위하여 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B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정한 연체이율(현재까지 연 8%)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위변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기한 내에 그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요율에 의한 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B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B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도록 사전구상 약정을 하였다.

다. B은 2020. 5. 7.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B은 위 대출금으로 'C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2021. 11. 15. D카드에 대한 카드대금 연체가 원인이 되어 2021. 11. 23. 원고의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채납 포함)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B은 2022. 2. 22.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22. 7. 14. 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18,105,041원(= 원금 18,000,000원 + 이자 105,0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를 2022. 3. 22.까지 납부하였고, 2022. 3. 22.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22. 7. 13.까지 113일에 대한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추가 보증료는 78,01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9가소29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23. 위 소송절차에서 'B이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되, 3회 분할하여 2019. 6. 23.부터 2019. 8. 23.까지 매월 23일 5,000,000원씩 각 지급한다'는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B은 2021. 12.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1. 12. 10. 접수 제1171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7호는 본인에 대하여 E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정보부도정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재단이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기초사실을 더하여 보면, B은 2021. 11. 23.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는바, 2021. 11.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2021. 11. 23. 원고의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2021. 11.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실제로 2022. 7. 14.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의 채무초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21. 12. 10.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2021. 12. 10. 기준 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5,000,000원이고, 소극재산 내역은 적어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8,000,000원, 피고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1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F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원 상당(채권최고액 36,3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21. 12. 10. 기준으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여부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2)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B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B이 변제하지 않아 채권추심을 위해 B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B이 근저당권설정과 분할변제를 약속하면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간청하여 분할변제 약정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준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도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여전히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별지